

Vol. 2

2023.2.24.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17

F. 02-545-539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원태희전임 thwon@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조세심판사례&대법원 판례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 등 규정의 실효성 제고와,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 완화 등 관세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특수관계자 과세가격 자료제출 제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로 과세가격결정자료 및 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하고, 증명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 행위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으로 정함.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 완화	재수출을 위해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환급 요건을 완화함.

(3) 시행일

’23.1.1.

I. 법령 개정사항

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제3호 대상 물품(공장 자동화 기계 등)에 대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감면 대상 공장 자동화 기계 지정 등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감면대상인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4에 규정한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 자동화 기계 등을 규정하고, 별지 제42호 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에서 규정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서식을 변경함.

(3) 시행일

’23.1.1.

I. 법령 개정사항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관세조사의 통지나 환급금액 등에 대한 징수내용 서면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협력을 제고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환급신청 기간 연장	종전의 환급신청 기간인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그 기간이 확대됨.
자진신고 배제 사유 삭제	종전에는 관세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관장이 환급금액 등에 대한 징수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가 불가능 하였으나, 해당 사유를 삭제하여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3.1.1.

I. 법령 개정사항

4.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2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4개 물품에 대해 2023년에 종전과 동일한 세율의 조정관세를 적용하거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일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조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일정 기간별 조정관세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명태 :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나프타 :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밖의 12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 적용	나머지 12개 물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함.

(3) 시행일

2023.1.1.

I. 법령 개정사항

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 71 조제 1 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총 101 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품목별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을 다르게 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할당관세 기존 적용 대상 적용기간 연장 및 신규 적용대상 추가	2022년 12월 31일에 할당관세의 적용이 끝나는 111개 물품 중 옥수수, 대두 등 92개 물품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9개 물품을 적용 대상에 새로이 추가하는 등 총 101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함.
기간별 할당관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파 : 2023년 2월 28일까지 • 닭고기, 냉동고등어 : 2023년 3월 31일까지 • 계란가공품, 돼지고기, 조주정 : 2023년 6월 30일까지 • 사료용 옥수수 등 91개 품목 : 2023년 12월 31일까지

(3) 시행일

23.1.1.

I. 법령 개정사항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2022년 1월 1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표 등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이의제기의 처리 등의 업무를 관세청장이 직접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별표 9]의 제9022호 품명 일부 수정	“[별표 9]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 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의 제9022호 품명 중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를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로 변경함.
권한 위임 규정 삭제	종전에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사전심사 결과의 통지, 이의제기의 처리,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및 변경내용의 통지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한 시행령 제52조를 삭제함.

(3) 시행일

’23.1.1

I. 법령 개정사항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한-인도네시아 FTA, 한-이스라엘 FTA)

(1) 개정 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지정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의 제출기한 연장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할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종전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함.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협정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입한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로부터 수입한 것인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I. 법령 개정사항

구분	내용
<p>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 규정</p>	<p>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또는 인도네시아·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p>
<p>긴급관세조치의 대상 물품 및 절차 등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긴급관세조치 조사 개시 서면통보 ② 긴급관세조치 적용대상, 적용기간, 재부과 금지기간 등 규정 ③ 긴급관세조치 후 조치일로부터 30일 이내 무역보상방법 협의, 1년 초과 적용 시 점진적 완화 조치 규정 ④ 긴급관세조치 조사 개시일로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 잠정긴급관세조치 불가 규정

(3) 시행일

23.1.1

I. 법령 개정사항

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한-인도네시아 FTA, 한-이스라엘 FTA)

(1) 개정 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각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p>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방식 등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결정기준을 지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도네시아 원산지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 인도네시아 통상부 발급 ② 이스라엘 원산지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발급하거나,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 수입 물품의 원산지 조사는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나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할 수 있도록 함.

I. 법령 개정사항

구분	내용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방식 등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면제 대상 수입물품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수출 목적 이스라엘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②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이스라엘로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는 물품 ③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인쇄광고물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간소화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수출자가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해서 해당 물품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원산지증명서의 정정 발급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사본 제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3.1.1.

I. 법령 개정사항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상 품목번호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번호 수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3-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부합하게 수정함.

(3) 시행일

23.1.1.

I. 법령 개정사항

10.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국민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실행 및 자체 제도개선 발굴 내용과, 2022.12.1. 발효한 한-이스라엘 FTA 및 한-캄보디아 FTA 적용물품 중 용도세율 대상물품을 고시에 규정하고,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된 '22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p>업무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 비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시 분청에 건별 공문보고 하던 것을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함. •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사후관리 생략물품(별표 1의 나)을 별표2의 특기사항에 추가하여 행정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p>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발효 예정 FTA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함. •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을 신규 지정함. [정제유(식품용), 전해액 첨가제(이차전지 제조용), 망간(철강제조용), 원유(항공유 제조용), 감자전분(식품용) 등]

(3) 시행일

'23.1.1.

I. 법령 개정사항

11.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기획재정부고시 제 2022-20 호(2022. 9. 14.)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확정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시까지 부과기간을 연장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과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 부과대상 물품(HSK 3920.92.0000) : 연신가공된, 두께 25μm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부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2022. 9. 14. ~ 2023. 1. 13. [변경] 2022. 9. 14. ~ 2023. 3. 13.

(3) 시행일

23.1.18.

I. 법령 개정사항

1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환급신청 기한 연장에 대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가산금 환급신청 기한 연장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 환급신청 기한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한 날부터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

(3) 시행일

’23.1.9.

I. 법령 개정사항

13.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수입항 체선료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개선하고,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를 변경하는 한편,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변경·철회·취소 절차를 마련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입항 도착'의 의미 구체화 등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의 '하역준비완료 통지가 발송된 때'로 규정하고, 수입항에서 체선료,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특수관계자간 사전심사 제도 관련 규정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접수·배부 주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사전상담은 현행대로 본부세관장이 수행하도록 함.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변경·철회·취소 절차를 신설함.

(3) 시행일

23.2.1.

I. 법령 개정사항

1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HS 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및 WCO 제 69 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HS해설서 오류사항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주 규정과의 불일치 사항과 호·소호의 용어와의 불일치 사항을 수정함. 오타·누락 문구 및 알기쉬운 용어 사용 등 그 밖의 관련 사항을 수정함.
HS 품목분류의견서 신규 검토건 추가	WCO 제69차 HS위원회 결정에 따른, 니코틴 함유제품(제2403호 및 제2404호), 피부겸용 샴푸(제3305호), 플라스틱 옷걸이(제3924호), 타이어(제4011호) 등 29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의견서를 추가함.

(3) 시행일

’23.1.20.

I. 법령 개정사항

15.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사전상담에 관한 신청절차 등을 신설하고,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절차 및 심사 배부기준을 변경하는 등 해당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 절차등 규정 정비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사전상담 접수·배부 주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 함.
사전심사 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세관과 심사 배부 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 일원화하고, 본부세관장은 배부받은 사전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함. • 특수관계 사전심사 본부세관을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으로 집중함. • 심사 배부기준을 신청인 본사 소재지 관할 세관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세관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주통관지 관할 세관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함.

(3) 시행일

23.2.17.

I. 법령 개정사항

16.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중 CAS 고유번호 "97-1-91", "97-1-92", "97-1-271", "97-1-311", "97-1-315", "97-1-334", "97-1-345", "97-1-436", "97-1-451", "97-1-472", "99-1-499", "2000-1-509", "2001-1-515", "2001-1-516" 및 "2008-1-577"의 총 15 개 화학물질의 명칭 및 성분함량 기준을 각각 개정하고,

CAS 고유번호 "2022-1-1095" 다음에 "2022-1-1096"부터 "2022-1-1109" 까지를 신설하여 유독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화학물질 명칭 및 성분함량 기준 주요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1-92 : 무기은 염류[Inorganic silver, salts] 및 이를 <u>1%</u>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311 : 트리페닐포스핀[Triphenyl phosphine; 603-35-0] 및 이를 <u>10%</u>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315 : 티람[Thiram; 137-26-8] 및 이를 <u>2.5%</u>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345 : 포르말린[Formalin; 50-00-0](<u>파라포름알데히드(Paraformaldehyde)</u>를 포함한다) 및 포름알데히드로서 <u>0.1%</u> 이상 함유한 혼합물 등 15개 품목에 대한 명칭과 성분함량을 개정함.
신규 유독물질 규정	2022-1-1096{o-페닐페놀[o-Phenylphenol; [1,1'-Biphenyl]-2-ol; 90-4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서 2022-1-1109{1,4-디브로모-2,5-비스(트리플루오로메틸)벤젠[1,4-Dibromo-2,5-bis(trifluoromethyl)benzene; 2375-96-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까지 총 14개 품목을 추가함.

(3) 시행일

’23.1.8.

II. 입안 예고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 등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수 명령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2022.12.1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수입업소의 제품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의 대상을 자사제조용 원료 등으로 확대하고,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내 반입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절차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회수·폐기 명령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회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통단계 질서를 확립하고 영업자 의무 준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을 서류·현장 검사 없이 통관 허용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우수수입업소에 한해 운영하였으나,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 가공용 원료 및 식품첨가물 향료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규정하여 원자재의 수급 원활화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II. 입안 예고

구분	내용
<p>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p>	<p>종전에는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경우에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없는 제품명을 제외함으로써 정밀검사 등에 대한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p>
<p>수출 농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p>	<p>종전의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 의무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므로 영업소에 납품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p>

II. 입안 예고

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위임규정 정비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등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강화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제고 유인책 마련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지침」을 고시 규정으로 상향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GDC 운영 활성화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자유무역지역법령 개정 후속 조치 및 제도 운영 미비점 보완	관리부호 발급 신청, 면세점 통합물류창고의 내국물품 반출확인 절차 생략 및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기한 연장 승인 등 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등 성실 업체에 대한 혜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제조업 지원 : 세관 개청시간 외 반입된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사용소비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자체폐기대상물품 지정 제도를 신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등의 폐기 후 잔존물이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 자율관리를 허용하고자 함.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GDC 정의, GDC 운영업체의 자격, GDC 물품의 반출입절차 및 품목단위 재고관리방법 등 GDC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사업자의 범위 확대 및 발급 의무기간을 연장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사업자간 거래에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을 착오함에 따라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판매·결재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한편 자료제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기준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규정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거래건당 금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 하고자 함
매출에누리와 판매 장려금 착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을 착오하여 판매장려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세액이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고,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구분	내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사유 구체화	<p>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제한사유로서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자 함.</p> <p>[발급제한 사유]</p> <p>① 「관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110조제2항제1호·제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p> <p>②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p> <p>③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내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④ 세관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그 신고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p>

II. 입안 예고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국내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내제조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다자녀 가구 구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 수탁자가 보충·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및 위탁공임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범위 명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판매 및 판매장 등 용어 정비	개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시 과세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혼선 방지를 위해 판매장 과세 방식과 관련된 용어를 삭제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수출자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범위를 간소화하여 수출자의 서류보관 부담을 완화하는데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p>보관대상 원산지 증빙서류 범위 축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된 수입자 보관 대상 증빙서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외된 수출자 보관 대상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②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변경 및 신설된 생산자 보관 대상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②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③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II. 입안 예고

6. 「관세법 시행령」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도 증명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입물품 평균신고가격 공표 기준 완화	원활한 물자수급 및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효과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수입물품 평균신고가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시송달 사유 확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및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된 것으로 규정하고자 함.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범위의 확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물로 반입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도 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간이세율 체계 개편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적용되던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단일간이세율 구간 폐지에 따른 세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종전의 20~55%에서 15~47%로 인하하고자 함.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송품 통관목록 제출시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에 대해서도 과세가격결정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구분	내용
제4방법 적용 시 공제되는 통상의 이윤·일반경비 비율 인상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시 공제되는 통상적 이윤·일반경비 관련 납세자가 제출하는 이윤·일반경비 비율의 인정범위를 현행 동종·동류 비율의 110%에서 120%로 확대하고자 함.
덤핑방지관세 약속의 제의 기한 명시	덤핑방지관세 조사과정에서 수출자가 가격약속을 제의할 수 있는 기한을 최종판정이 있기 45일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간 포함 배제 대상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처리기간에 전문기관 기술자문, 신청인 의견 진술 등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고자 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경정 가능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까지 세관장의 경정을 유보하도록 하되, 납세자의 조기 경정 신청이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중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등은 결정 전이라도 경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가 통합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일선세관의 관세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의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관세청과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규정하고자 함.
통관우체국 지재권 침해물품 통보 관련 규정 정비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 통관보류 등을 한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에 통관우체국 도착 물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구분	내용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 절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 정보를 물품수령인의 성명, 통관고유부호, 물품의 품명·수량 등의 정보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기업: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플랫폼 기업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하기 위함. 관세청장은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물품의 품명, 납부세액,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등의 정보로 구체화하고자 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취소 사유 일부 수정	<p>관세사법 제29조제4항(벌금 200만원 이하 처벌 대상)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취소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함.</p>
관허사업 제한요구 관련 체납횟수·체납합계액 산정기준 등 신설	<p>관세법 제326조의2제3항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납한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세 및 내국세등 ②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가산세 ③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강제징수비
구매대행업체 월별 거래 명세 제공 근거 규정 신설	<p>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구매대행업체의 월별 거래 명세를 제공받도록 관련 별표에 규정하고자 함.</p>

II. 입안 예고

구분	내용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절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정보보호시스템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로 정함.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사용 목적·기간 및 사용자 등이 포함된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제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II. 입안 예고

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시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제한기간인 2년 이내 정액환급으로 환급방법을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최초로 환급받는 중소기업에 한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날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환급 적용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가산금 우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 일 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환급방법 변경 시 소요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추가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이후 다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려면 제한기간(2년)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비적용 승인 이후 환급실적이 없는 기업에 한하여 제한기간 내에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 추가하고자 함.
환급방법 변경 시 적용범위 확대	수출 중소기업이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도록 승인받은 경우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한 물품부터 정액환급률표를 비적용하여야 하나,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 이후 환급신청 시점에 환급방법을 인지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비적용 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II. 입안 예고

구분	내용
환급신청 기간 연장에 따른 조문 정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가산금 우대이율 배제 규정 신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관세조사 통지 이후 등의 경우에도 과다환급금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이 경우 과다환급금 징수 시의 일반 가산금 이율인 1일 10만분의 39을 적용하는 규정 신설

II. 입안 예고

8.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안계획

(1) 개정 이유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프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 년간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p>덤프방지관세 부과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대상 물품(제3920.92.0000호)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연신 가공된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두께가 25 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것.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 • 적용기간 : 공포한 날부터 5년. • 덤프방지관세율 : 공급자별로 4.90~28.60%로 함.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 호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 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9.1.10.부터 2021.8.23.까지 000 소재 000(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모델번호 000 의 압전 진동판(이하 “쟁점물품①”이라고 한다) 및 모델번호 000 의 압전 진동판(이하 “쟁점물품②”이라고 하고,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②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00 호 외 000 건으로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품목번호를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 8531.80-9000 호(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000 세관장은 2021.7.13.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적정여부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1.9.3.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제 8512.30-0000 호(기본세율 8%)로 변경하면서 그 적용 세율차에 따라 수입신고시 부족납부한 관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및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1.2.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 8531.80-9000 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적용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및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환급하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사양서상 정격 전압, 작동온도 및 사용범위 등에 비추어 자동차용으로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모든 전기식 신호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 8531.80-9000 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3) 결정일

2022.12.26. (조심 2022 관 004)

Ⅲ. 조세심판원 사례

2.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 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 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6.2.4.부터 2019.12.27.까지 000 소재 000(이하 “AAA”라 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등 000건으로 0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종이를 몰딩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41.40-0000호, 「대한민국 정부와 000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000 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8. 전산감사를 통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의 적법한 품목번호는 레이저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로 분류되는 HSK 제8456.10-3000호(HSK 5차 개정, 기본세율 8%) 또는 제8456.11-9000호(HSK 6차 개정, 기본세율 8%)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품목분류 신고오류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1.1.14. 품목번호를 HSK 제8456.11-9000호로 변경하여 부족세액 000원을 000과 같이 수정신고하면서, 이를 000차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20.4.1. 000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2020.11.13. 000원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8456.11-9000호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1.10.6. 및 2021.12.21.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종전에 신고한 HSK 제8441.40-0000호임을 전제로 위 다.에서 분할납부(5·6차)한 수입신고번호 000 등 000건의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0.26. 수입신고번호 000 등 000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쟁점1처분”이라 한다)하고, 2021.12.27. 나머지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쟁점2처분”이라 하고, 쟁점1처분과 쟁점2처분을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Ⅲ. 조세심판원 사례

(2) 결정요지

쟁점물품 중 자동급지장치를 갖추어 종이 이외 다른 재료를 가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 8441 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나 종이 가공에 특화된 기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양한 재료를 가공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제 8456 호로 분류됨이 타당함.

(3) 결정일

2022.12.26.(조심 2022 관 0049)

Ⅲ. 대법원 판례

3.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주요내용

갑 주식회사가 을 일본국 법인과 의약품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특약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저가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관세법 제 30 조 제 1 항 이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 31 조 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료 독점 수입 계약에서 정한 단위당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갑 회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호 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일본국 법인과 의약품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여 위 특약에 따라 무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저가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 되었으므로 관세법 제 30 조 제 1 항 이 정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부인 하고, 관세법 제 31 조 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료 독점 수입 계약에서 정한 단위당 구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갑 회사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일본국 법인 사이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갑 회사가 특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지급액'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점, 특약이 포함된 원료 독점 수입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 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 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지급액과 연간 총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Ⅲ. 대법원 판례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갑 회사가 이를 수입할 당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 17 조 제 1 호 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선고일

2022.11.17. (2018두 47714)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23 년도 업체별 특정물질 제조·수입허가 및 판매계획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는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23 년도 기준 한도 내에서 특정물질 제조·수입을 허가하고 판매계획을 승인했다.

제조는 1 개社에 4250DP*톤(7,735 톤)을 허가했으며, 이중 제조용원료로 2580DP 톤(4,700 톤), 제조수량으로 1670DP 톤(3,035 톤)을 배정하였다.

또한, 수입은 27 개社에 6380DP 톤(8,689 톤) 허가를 확정하였다.

동 쿼터량은 특정물질심의회('12.10 월)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연도별 감축률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재활용과 실험·분석용 등 의정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제조·수입을 허가하였다.

구 분	예외적으로 제조·수입 허가 물량
재활용	소비량 산정 제외 대상인 회수·재활용할론 82톤 수입 허가
실험·분석용	사염화탄소 등 11종 0.3083톤 수입 허가
제조용 원료	소비량 산정 제외 대상인 제조용 원료 40톤 수입 허가
파괴	부산물로 발생하는 사염화탄소 6,000톤 제조 허가, 전량 파괴(소각)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정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표준모델 개발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 대체물질 적용설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을 융자(기준금리-2%, 최저금리 1%)해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2.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영)는 중국의 단기비자 및 경유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하여 수출 지원기관, 주요 업종협회가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대책회의는 중국의 단기비자 등의 발급제한 조치에 따른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 산업부 무역투자실실장(주재),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반도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석유화학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전시산업진흥회 등 • 주요내용 : 중국의 단기비자 발급중단 등 조치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점검, 기업 지원방안 등 대응계획 논의

대책회의에서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지원기관은 비자발급 제한으로 중국방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인들의 중국방문 제한 등에 따른 애로사항 접수센터를 설치하여 정보제공과 더불어 온라인상담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을 밀착 지원하기로 하였다. (※ 대표전화 ☎ 02-6000-5856, chinatteam@kita.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차이나 무역지원 데스크」를 운영하여 중국 현지무역관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출장 및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국 출장 애로기업을 위해 수출거래선과의 대리면담, 전시회 대리참관, 현지에서 지사 역할을 대행하는 긴급지사화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대표전화 ☎ 1600-7119 → 5)

한편, 중국 수출 주요 업종 협단체에서는 관련 기업과의 소통을 긴밀히 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 지원기관 등의 지원기능을 적극 안내하고 정부 및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규모의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요 무역대상국인 만큼, 업계와 긴밀한 소통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의 단기비자 제한 조치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공유하는 한편, 유관부처, 수출지원기관, 수출업종별 협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3.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환경, 식약처가 만들어 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수입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추진 목표와 전략을 담은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②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③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이 있다.

① 그간 부적합 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고, 영업자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자 함.

- (중점관리 대상 선정)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건강 취약계층 섭취식품, 대량 보관하는 냉장·냉동제품, 국민 다소비 식품, 소비(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기획 점검(40 개소)을 실시.

- (신고포상금 제도 본격 운영) 「수입식품법」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하는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중.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22.2.18)

②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 식품, 특정시기 성수식품 등 연중 7,000여건의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고, 특히 식품 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제품과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 (둔갑 우려 수입식품 선제적 관리)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제품을 식품으로 둔갑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둔갑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선제적으로 검사*함.

* (1, 2분기) 농산물, (3분기) 가공식품, (4분기) 수산물

- (위해도 분석 기반 검사) 부적합 비율, 위험공정 포함여부, 수입량, 제조국가 등 위해도 항목을 전자적으로 분석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거·검사함.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위해도 점수 상위 제품 중 유통단계 위해요소가 많이 포함된 제품 250건

③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중에 있다.

- (구매·검사 확대) 다이어트·성기능 향상의 효능·효과 등을 강조해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를 강화(연간 3,100 건)하여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 (유관기관 협업 강화) 위해성분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해외직구 식품 관련 정보** 등을 수시 제공.

* (관세청) 해외직구 위해식품의 정보 제공을 제공해 통관단계 국내 반입 차단 /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27 개 주요 온라인 유통사가 가입)’을 활용해 해외 위해식품 정보 실시간 송출 및 판매 차단

** 해외직구 식품의 통관 차단 제품, 정식 수입식품 등 제품정보, 해외 위해식품, 해외 리콜 정보 등 위해정보, 국제 거래 상담 정보, 안전·독성정보 등

- (해외직구식품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검사 근거 ▲소비자 사용실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구매대행자·판매중개자의 해외직구식품 자율 관리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마련하고자 함.

* 위해식품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축 등 건전한 판매환경 조성 활동 등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4. 국제무역선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비과세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 체선료 등은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체선료란, 선박을 빌린 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하였을 때, 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관련근거:관세법 제 30 조 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 20 조 제 5 항)

이때, 과세 기준점이 되는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은 선박(국제무역선)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되어 왔다.

- * (참고)수입화물하역 과정
: 국제무역선 국내 도착→부두 접안→화물하역 시작&종료

이에 따라,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부두 '접안'이 지체되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 관련 비용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물류 지연으로 선박의 국내 도착 후 대기시간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체선료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과세대상 체선료도 늘고 있다

- * 예: 유연탄(발전 5 개社) 수입항 체선료(억원)
: ('18)715→('19)1,053→('20)820→('21)775→('22)1,400

사 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를 정제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는 A사는 갑작스러운 중국 상해 봉쇄로 인한 물류 중단으로 제품 출하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내 원유 저장탱크가 가득 차, 원유를 제때 하역하지 못하고 유조선을 대기시키고 있다. • 이에 따라 용선계약에 따른 정박기간을 넘기면서 A사가 선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입항 체선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체선료는 하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규모(금액)를 예상하기 어렵고 수입신고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수입화주는 수입신고 시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추후에 재차 확정가격신고를 해야하는 등 업계의 불편과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입항 후 하역 지체에 따른 체선료가 주로 원유·유연탄 등 원자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체선료에 대한 과세는 발전원가, 공공비용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이에, 관세청은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2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 * 도선료(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예선료(독항력이 없는 타선을 예인하기 위한 예인선 사용료), 강취료(선박을 부두에 고정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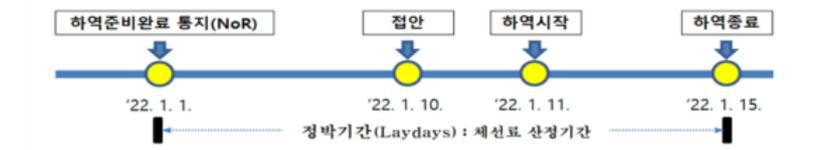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22-52 호)

동 개정안에서는 운송비용의 과세기준점인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의 의미를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 선박이 계약상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여 도착선으로 인정되고, 운송물의 하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선장이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시점

※ <사례>

수입항 운임 과세 기준 시점을, (現) **접안 시로 해석** : 1월 10일 이전의 **체선료 과세**
 → (改) **하역준비완료 통지 시로 명확히 규정** : 수입항 **체선료 전체 비과세**



앞으로, 물류 대란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현장 실태점검, 업계 간담회('22.9)*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업계관계자들은 금번 고시개정으로 업체들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이 많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 * [참석자] 금호석유화학(주), 지에스칼텍스(주), ㈜포스코, 한국남부발전(주), ㈜E1, 관세법인 에스에이엠씨, 대성관세사무소, 진남합동관세사무소, 한려관세사무소, 해천합동관세사무소 등 총 10 개사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5. 관세청,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분류 기준 제시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이차전지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74 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 * 이차전지 :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저장이 가능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전지로, 휴대폰·전기차 등 다양한 기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

이번 지침서에는 ▲이차전지 분야 원료·소재·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품목분류 기준(사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정보가 담겨있다.

대외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올바른 품목분류는 필수적이다. 품목분류(HS)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품목분류와 품목분류(HS)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분류)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관한 국제협약 ('품목분류(HS) 협약」)에 따라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분류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국제무역에서 관세, 무역, 통계 등에 전세계 공통으로 동일하게 사용되는 상품분류제도이며, 이에 따라 6자리 품목번호(품목분류(HS)코드)가 결정되고 6자리 아래 품목번호는 나라별 운영(한국 10단위, 유럽연합 8단위, 미국 10단위, 일본 9단위 등) • (중요성)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HS)코드에 따라, 관세율 및 수출입 요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대외무역의 기본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분쟁 사례
<p>한국 기업 A사는 B국으로 전자기기를 수출하는 회사이다. 한국은 해당 전자기기를 제8537.20호(관세율 0%)로 분류하고 있어 A사는 B국 수출 시에도 동일한 품목번호를 사용하였다. B국은 해당 전자기기를 제8535.90호(관세율 5.4%)로 분류하여 A사에게 품목분류 오류를 통보하였다. A사는 B국에 5년간 수출한 물품들에 대한 관세 및 가산세 4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p>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특히, 기술변화가 빠른 첨단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불분명하여 수출입 업체들은 품목분류와 관련한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작년 9 월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번에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차전지 산업은 신성장 수출 첨단산업으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분야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동 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액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단위 : 백만불]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입 동향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증가율
수출	5,353	6,266	6,469	6,662	7,824	10.0%
수입	779	1,338	1,359	1,757	3,480	45.4%
무역수지	4,574	4,928	5,110	4,905	4,344	-

출처: 한국무역협회

세계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회 및 주요 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 발간을 추진하였다.

* ['21년 리튬이온전지 국가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중국(45.5) > 한국(37.0) > 일본(13.4) > 기타(4.1)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엘지(LG)에너지솔루션, 삼성에스디아이(SDI), 에스케이(SK)온 등 이차전지 분야 주요 업계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번 지침서 발간으로 이차전지 분야 국제적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산업 지원의 근간을 마련하고, 이차전지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분류 지침서는 품목분류와 세율에 대한 안내(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기업에게 관세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사후 추징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번호)에 기반한 무역통계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❶공급망 위험관리, ❷할당관세 적용 등 산업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할 것으로 보인다.

사 례
<p>[사례 ❶]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인 이차전지 관련 필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대해 품목분류(HS)코드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및 요소수 사태 등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본 지침서를 활용하여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점검과 즉각적인 위기 대응 가능</p> <p>[사례 ❷]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해 주요 수입 소재 및 장비 등을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할 때, 본 지침서를 활용하여 품목 선정 및 세제 혜택 지원 가능</p>

향후에도 관세청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우리 기업의 품목분류 관련 무역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디스플레이('22.9 월) → 이차전지('23.1 월) → 반도체('23.2 월) → 자동차부품('23.상반기)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지침서는 관세청 누리집에 이북(E-Book) 형태로도 게재되어 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품목분류(HS) > 품목분류(HS)가이드 >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